

천주교수원교구

CATHOLIC DIOCESE OF SUWON

우 16346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정자동) / 전화 (031) 244-5001~5 / 전송 244-3991

문서번호 천수교 2019-172

시행일자 2019. 9. 2.

수신 제위신부 및 기관장

참조 전교수녀, 총회장, 사무장,
연말정산 담당자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결재 · 공람		
	번호	:			
처리과					
담당자					

제목 교구 재단법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안내

† 소통과 참여로 쇄신하는 수원교구! 신앙의 기쁨! 젊은이와 함께!

교구는 매년 말 신자들의 연말정산을 위해 발급해 왔던 ‘기부금 영수증’을 2020년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신자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동의서 접수 주체 : 교구 재단법인 명의의 본당, 기관, 성지, 단체
2. 동의서 제출 대상 : 상기 법인 명의의 본당과 기관에 기부금을 내는 **모든 개인**
 ※ 사업자 명의의 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서면으로 발급
3. 서비스 이용 필수 조건 :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기부금을 낸 개인으로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개인**
4. 서비스 시행일 : 2020년 1월부터 시행(2019년 기부금 납입분부터)
5. 서비스 이용 방법 : 붙임 1 참조
6. 관련문의 : 교구 관리국 경리과(☎ 031-241-7968)

- 붙임**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2.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개인 작성용).
 3. 국세청 기부금 작성 서식(본당양업 미사용 해당)(경리과 제출용). 끝.


총 대 리 이 성 호 주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공제 영수증 자료를 발급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수원교구도 2020년부터 **교구 소속 법인 명의로 발급되는 종교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으로 교구 국장회의(2019. 8. 1.)에서 결정하였습니다(본 서비스 이용시 서면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지 않아도 됨).
- 이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자들의 동의서를 받아, 해당 본당 및 기관에서 양업 업로드(양업사용시) 및 엑셀로 정리·경리과 송부(양업미사용시)가 필요한 바, 본당 및 기관 신부님들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자들이 본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동의서 접수 주체 : <재단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135-82-00919>

상기 사업자 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교구 소속 본당, 기관, 성지, 단체

2. 동의서 제출 대상 : 상기 법인 명의의 본당과 기관에 기부금을 내는 모든 신자(개인)

※ 사업자 명의의 기부금은 본당과 기관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서면으로 발급.

3. 서비스 이용 필수 조건(요약)

가. 개인 :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기부금을 낸 신자로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서면 동의서(붙임 2)를 제출한 신자(개인)

나. 양업프로그램 **사용** 본당 및 기관 → 신자가 제출한 동의서 내용을 양업프로그램에 입력

다. 양업프로그램 **미사용** 본당 및 기관 → 신자가 제출한 동의서 내용을 엑셀에 입력하여 경리과에 송부

※ 2020년 1월 5일까지 상기 ‘가~다’ 조건을 완료하여야 함.

4. 서비스 시행일 : 2020년 1월부터 시행(2019년 기부금 납입분부터)

5. 서비스 이용 방법

항목	내 용
공 통 사 항	① 2020년 1월 5일 이후에 동의서 등록 및 취합본(본당, 성지, 기관, 단체)이 제출된 경우 → 2019. 1. 1.~12. 31. 납입분은 기부금 영수증은 각 본당/기관에서 기존 방식으로 발급. → 2020. 1. 1.~12. 31. 납입분부터 간소화 서비스부터 이용 가능.
	② 2020년 1월 5일 이후, 본당 및 기관의 양업 입력(전산마감) 및 엑셀 제출이 마감되며, 교구 경리과에서 본당 및 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와 제출된(엑셀)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므로 자료의 수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③ 간소화 서비스 <u>동의서(신자 개인 작성용) 및 엑셀 파일(경리과 송부용)</u> 은

	공문 및 <그룹웨어>-<파일관리>-<공용폴더>-<공개>-<경리과관련서식>에 있음. ④ 신자 개인이 제출한 <u>서면 동의서는 원칙적으로 본당·성지·기관·단체에서 보관함</u> (외부유출 불가) ※ 동의서의 활용 및 보관 기간 : 동의자 본인이 간소화 서비스의 중지를 요청할 때까지 활용 가능함.
양업 입력 또는 파일 전송	양업 사용 ① 주보 및 미사 공지사항 등의 홍보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 취합 ② <u>양업 프로그램에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 제출 표시에 확인</u> ③ 동의서의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및 납입 내역 등 개인정보는 정확하게 기록 ④ <u>2020년 1월 5일까지 본당에서 양업에 입력한 자료를 교구 경리과에서 일괄 취합</u> ⑤ <u>신자가 동의서 작성 후 폐기를 요청할 경우, 양업에서 동의서 제출 표시를 반드시 삭제</u>
	양업 미사용 ① 회보 및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홍보를 통한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 취합 ② <u>동의서를 제출한 개인에 한하여 교구에서 제공한 엑셀 파일에 개인정보 입력, 저장</u> ③ <u>2020년 1월 5일까지 본당에서 저장한 엑셀 파일을 교구 경리과로 이메일 전송</u> ④ <u>신자가 동의서 작성 후 폐기를 요청할 경우, 경리과 제출 엑셀 파일에서 개인정보 반드시 삭제</u>

※ 서비스 이용 준비 시 주의 사항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 미제출자 및 사업자명의 후원자는 기존 방식으로 발급합니다.
- * 등록된 간소화 서비스의 중지는 본인 요청 시에만 가능하며, 중지 후 간소화 서비스 재등록 전까지는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음을 본인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 * 동의서를 작성한 후 당사자가 동의서의 폐기를 원할 경우(제출한 서면 동의서 폐기),
→ 양업프로그램 사용 본당 및 기관에서는 반드시 양업 프로그램에서 동의서 제출 표시를 삭제해야 합니다. 양업 프로그램에 미삭제 시에는 차기 연도 전산실의 일괄 자료 취합에 포함되어 개인정보 관리에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필히 삭제하여야 합니다.
→ 양업프로그램 미사용 본당 및 기관에서는 경리과에 엑셀 파일 제출 명단에서 삭제합니다.

6. 신자 홍보 시 주의 사항

가. 홈택스 서비스 등록 후에는 개인정보 변경 및 납부자 변경이 불가함을(2020년 1월 5일 이후 수정 불가) 반드시 숙지하시어 개인별 동의서 작성에 착오가 없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개인 명의로 기부한 기부금을 사업자 명의로 변경을 요청할 경우,
→ 제출기한(2020년 1월 5일) 내에 경리과로 변경 공문 발송(본인 명의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 다. 실행 초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바,
→ 반드시 마감 기한 내에 제출하여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십시오.
- 라. 양업 프로그램 미사용 본당은 신자들의 편의를 위해 2020년부터 양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제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구두 동의서나 임의, 일괄 등록 불가)
- 바. 본당과 기관 등 여러 곳에 기부금 내고 있는 경우, 기부금을 내고 있는 기부처에 동의서를 건넌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기부처 10곳일 경우 → 개인 동의서 10장 작성 제출).